====== 【 기술보호와 법 】 =======

<<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이해 >>

I. 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

1. 영업비밀의 의의

(1) 영업비밀의 개념

- '비밀'이라는 단어는 민법이나 형법 등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통일적으로 규정된 정의는 없다. '우주의 비밀'을 절대적 비밀이라고 한다면 법률상 비밀은 상대적 비밀에 속 한다고 할 수 있다.
- 영업비밀도 법률상 비밀이기 때문에 상대적 의미의 비밀이다. 몇몇 사람이 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라도 이를 알고 있는 구성원 전원이 비밀유지 서약을 한 경우는 정보를 영업비밀로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영업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2) 영업비밀 보호 목적

-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TRIPs 협정에 따라 1992년 12월 15일 도입된 제도로써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 모두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3) 영업비밀의 재산적 가치

- 유럽지식재산청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조사한 Community Innovation Survey 2012 발표 데이터, 즉 유럽 역내 20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을 보호하고 있는 수단을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영업비밀이 응답기업의 52.3%에서 혁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허와 비교해도 더 높은 비율로 이용되고 있다는 결과를 근거로 영업비밀이 기업의 "가장 가치있는 자산 중 하나"라고 결론 짓고 있다.

(4) 영업비밀 유출 피해 규모

- 2016년 특허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업비밀 보유기업의 14%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하였고 평균 피해금액은 21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 기술보호와 법 】 =======

-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보조금으로 2011년 설립된 NGO단체인 "CREATe.org"와 다국적 회계 컨설팅 기업인 "PwC" 공동연구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공업국의 영업비밀 도용에 의한 피해 규모는 GDP 대비 1~3%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를 우리나라의 2020년 GDP에 적용해 보면 연간 최소 19조원에서 최대 58조원 규모로 추산할 수 있다.

(5) 영업비밀제도 보호 연혁

- 1991년 12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보호제도 도입
- 1998년 12월 반도체 국외유출사건을 계기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

(6) 영업비밀의 유형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정보와 영업상의 정보로 나누고 생산방법과 판매방법을 각각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다.
- 기술상 정보는 특허능력이 있는 반면 영업상 정보는 특허능력이 없다고 한다.

구분	종류	예시
기술정보	제품·시설 설계도	공장 설계도, 기계장치 배치도, 생산라인 설계도, 공정 설계도
	프로그램 소스코드	
	제품 생산방법	가공, 조립, 제조방법
	원료 배합 정보	원료 배합 배율, 배합 순서, 시차
	연구개발 정보	연구개발 과정, 결과 보고서, 실험 데이터
	시험 데이터	의약품의 효능, 시제품 성능, 기계장치 시운전
경영정보	고객명부	
	주요계획	신규 투자계획, 신제품 개발 계획, 마케팅 전략
	관리정보	거래처 정보, 원가분석, 마진율, 입찰 가격, 경영분석
	매뉴얼	판매, 홍보, 가격산정, 교육 등 관련

2. 영업비밀의 요건

- (1) 비공지성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함.
-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이며,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 경제적 가치가 있고 그 보유자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여도 누구나 쉽게 접근

======= 【기술보호와 법】======== 하여알수있는 정보라면그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며그 이용이 타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 불특정 다수가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 -->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된다.

<사례> 역설계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사례> 조합방법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

공연히 알려진 정보의 조합일지라도 그 조합방법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아서 한 쪽 업체의 정보가 다른 경쟁사의 정보에 대하여 우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 ① 고액소득자, 로터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의사회 등의 명부에서 수집한 인명, 주소, 전화 번호(공연히 알려진 정보의 조합)일지라도 이를 200만명에 대한통신판매 결과를 토대로 추출, 정리(조합방법이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음)한 3만명의 고객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 ② 200여명의 고객을 정리한 고객명부도 판매비용을 절약하여 영업의 효율화를 달성하는 가치(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비공지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다.

<사례> 국외 공지

음료나 맥주의 용기에 내용물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테이프나 열감지잉크 등의 온도감응수단을 부착하는 아이디어는 국내에서 사용된 바는 없다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 에 있었으므로, 온도테이프를 부착한 맥주 용기에 관한 아이디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지법 96가합7170 판결).

- (2) 경제적 유용성 : 기술상·경영상 가치가 있어야 함.
- Q. 실패한 데이터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 경쟁자에 대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할 경우 당해 정보는 경제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실패한 실험 데이터라 할지라도 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반면, 종교상의 교의를 담은 문서는 순전히 영적인가치와 결부되어 영업비밀로서의 경제적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기술보호와 법 】 =======

-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되는 '영업비밀'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기업의 탈세사실이나 공해물질 유포사실 등 반사회적 정보(예. 뇌물정보, 스캔들)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없어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 < 독립된 경제적 가치 판단 기준 >
- 1)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거나 판매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혹은 경쟁자에 대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때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 2)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때
- 정보의 취득사용에 있어 대가나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혹은 정보의 독자적인 개발을 위해 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할 때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사례>

소극적인 정보라도 사업활동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예를들어 장기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 연구나 실험결과를 통하여 어떤 공정이 유용하지 않다는 정보 역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험을 생략하여 연구개발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2000가합54005 판결).

- A. 따라서 실패한 데이터의 경우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 (3) 비밀관리성 : 비밀로 관리되어야 함.
-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고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 상당한 노력 :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고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나 접 근 방법을 제한,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
- 영업비밀은 당해 기업의 종업원이나 외부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로 관리되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영업비밀은 보유자가 비밀에 접근하거나 접근하려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어야 하며, 그 특정된 비밀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야 하고, 접근자에게는 부당한 사용이나 공개를 금하는 수비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의 정도는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창으로 침입한 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정도만으로도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서류를 자유로이 열람하는 사내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서류비밀표시를 붙여두던지, 라커에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충분하였는지 판단할 때에 기업의 규모를 고려한다. 즉 기업 규모에 비추어 과도한 정도의 비밀관리 노력을 요구하지 않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밀관리 노력조차 취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 노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영업비밀이 알려지지 않게(비공지성) 비밀로 관리되고 있고(비밀관리성), 영업비밀 덕분에 회사 경쟁력이 올라가게 된다(경제적 유용성).
- 비밀일기는 인정될까?
- 위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일기는 경제적 관점에서 의미가 없으므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3.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느 것으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한가?

(1) 특허

- 보호대상 :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 보호요건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보호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배타적 권리

(2) 영업비밀

- 보호대상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보호요건 : 비밀성, 독립적 경제적 가치, 비밀로 관리
- 보호기간 : 비밀로 유지되고 관리되는 동안

(3) 특허로 보호될 때의 장점

-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침해자에 대해 민사적·형 사적으로 강력한 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4) 영업비밀로 보호할 때의 장점

- 비밀로 유지하는 한 기간의 제한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적 정보나 비밀로 간직하고 있는 관리비결 등 경영정보 및 영업상의 아이디어 등도 보호받을 수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4. 다른 유사개념과 비교

(1) 기업비밀

- 영업비밀과 기업비밀을 구분짓는 경우, 기업비밀은 넓은 의미로는 산업비밀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영업비밀을 뜻한다.

- 영업비밀은 일종의 기업비밀이며, 기업비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이다. 하지만,
-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보호법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는 정보인데 반하여 기업비밀은 요건의 충족과는 상관없이 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산업기술

-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술 뿐만 아니라 경영상 정보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성립 요건으로 하는데 반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상의 산업기 술은 이러한 요건을 두지 않는다.

(3) 국가핵심기술

-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이라는 개념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국 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 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 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을 뜻 한다.

(4) 방위산업기술

-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 위사업청장이「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 【 기술보호와 법 】 =======

5.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특성

- (1)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상태를 보호
- 특허법, 실용신안법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이에 반해 영업비밀보호법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관리하는 경우에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는 다르다.

(2) 독점·배타권이 없음

- 영업비밀보호법은 특허권처럼 정보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상태'를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영업비밀을 보호한다.
- 그러므로 영업비밀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계속 보호가 가능하며, 독점·배타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동일한 영업비밀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는 경우 본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 기술보호와 법 】 ======== << 영업비밀과 기술보호 >>

I. 영업비밀

1. 영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

- (1) 경제적 유용성의 의미
-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판단 기준은 영업비밀보유자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취득하거나 독자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 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 (2) 경제적 유용성의 범위
-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아도 장래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경쟁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 등도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 실패한 실험 데이터의 경우 경쟁사가 이를 입수해 사용할 때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해 연구개발비, 시간 등 절약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 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 특허는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영업비밀은' 경제적 유용성만 있다면 '기술적 정보' 뿐만 아니라, 거래처와 고객리스트, 판매방법과 같은경영상 정보도 영업비밀의 대상에 포함된다.

2. 비밀성 (비공지성)

- (1) 비밀성으로 인정
-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공연히 알려져있지 않은 비공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일부 또는 일정 범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로 유지되고 있거나 타인이 대체적인 윤곽은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 상세 정보를 갖지 못한다면 '비밀성'은 인정된다.

======= 【 기술보호와 법 】 ========

- (2) 특허의 신규성과 비교
- 특허의 신규성은 절대적 기준인 반면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상대적 개념이다.

3. 비밀관리성

- (1) 비밀관리성의 의미
- 경제적 유용성이 있고,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정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 되어야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나 접근방법(물리적 조치)을 제한하며 그 정보에 저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 (2) 비밀관리성 인증여부
- 영업비밀은 특허청의 등록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기업 등 영업비밀 보유자가 스스로 지키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II. 영업비밀과 다른 제도의 비교

Q. A사는 회사규모가 크지 않아서 경제적 가치가 큰 고객 정보를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었다. 이 정보가 경쟁사에 의해 무단으로 제공이 되었을 경우 경쟁사에 대해서 사용금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

1. 영업비밀과 형법상 '배임'

- (1) 업무상 배임죄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된다.
- 법률상 계약 등 당연히 지킬 것으로 예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 행위를 하게 됨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지는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

======= 【 기술보호와 법 】 ======== 업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한 영업상 관련 기밀 유출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

- 배임 규모가 상당히 커서 5억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기밀을 유출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처벌이다.

(3) 영업비밀로 보호

- 앞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영업비밀은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정보가 비밀인 상태에 있고, 상당한 비밀관리 노력을 할 경우 인정되는데,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 공개,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가 가능하고, 긴박한 상황인 경우 가처분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서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다.

2. 영업비밀과 '산업기밀'

- 국가 핵심기술, 국가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 상의 정보로서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술인 경우 인 정되는데, 기밀 유출자 개인에게 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유출된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 공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금지청구가 가능하다.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A.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누설한 개인에 대한 형사 책임 뿐 아니라 상대방 기업에 '금지청구' 를 할 수 있다.

Ⅲ. 대학/공공연구소의 영업비밀보호

Q.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에서의 수익활동은 영업비밀의 요건 중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 【 기술보호와 법 】 ========

- 대학과 공공연구소는 기본 정체성은 영업활동을 하는 곳은 아니며, 수익활동을 한다고 하여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부수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은 영업비밀을 보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1.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법개정

- 2014년 1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중요한 법개정이 있었다.
- 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적용하던 벌칙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변경이 되었다.

2. 철저한 비밀의 관리

- 연구성과물을 특허로 활용할 계획이면, 기존의 관리 체계를 따르면 된다. 하지만 영업비밀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면 특별히 '비밀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경제적 유용성, ②비밀성(비공지성), ③비밀관리성 세가지 요건이 요구되는데, 아직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다면 경제적 유용성은 큰 문제가 안될 것이다. 하지만 비밀관리성은 철저히 요구된다.

<참고> 영업비밀관리 확인

-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문서 또는 파일에 '대외비' 등을 표시하고 있는가
- ▷ 영업비밀을 '대외비', '극비' 등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는가
- ▷ 영업비밀 관리 규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가
- ▷ 특정인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가
- ▷ 임직원에게 보안 교육 등을 시행하는가
- ▷ 패스워드 설정, 복사제한 조치 등을 취하는가
- ▷ 입사/퇴사시 영업비밀준수 및 겸업금지 서약서를 받는가
- ▷ 퇴사시 영업비밀 관련 업무의 인수인계, 관련 자료 및 PC 등을 반환하는가
- ▷ 사내 시스템에 접속가능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가
- ▷ 방문자, 거래처, 협력 업체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약정을 체결하는가
- ▷ 영업비밀이 생성되는 장소에 대해 별도 보안 시설을 하는가
-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반출 및 복제를 제한하는가
- ▷ 인터넷 또는 사내 네트워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는가
- ▷ 영업비밀을 보관하는 장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접근을 제한하는가
- ▷ 영업비밀이 보관된 컴퓨터 등에 로그인 암호 등을 설정하고 통신보안을 취하는가
- A. 대학이나 공공연구소 등 비영리법인도 영업비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IV. 역분석(역설계, Reverse Engineering)

Q. '초코찰떡파이'에 대해 '외피가 도포된 떡 및 제조방법'은 특허로 보호를 받고, 떡의 원재료 및 배합비 조정으로 떡이 상하지 않고 5개월 동안 보존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은 영업비밀로 갖고 있는 경우에 경쟁사가 역분석으로 원재료 배합비율을 알아내어 제품을 출시할때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1. 영업비밀의 침해

-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다음 두가지로 나뉜다

(1) 부정취득

- 절도,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속이거나, 협박, 기타 부정 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한 사용, 공개는 모두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며, 사용,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 자체만으로도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2) 부정공개

- 근로계약 또는 실시계약 등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 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역분석(역설계)의 적정성

- 역분석(역설계)에 의한 영업비밀의 취득한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행위이다.

(참고) 정당한 영업비밀 취득행위-미국

- ▷ 독립적으로 개발한 취득
- ▷ 리버스 엔지니어링
- ▷ 영업비밀보유자의 허가를 얻은 취득
- ▷ 공개사용 또는 전시물에 대한 관찰을 통한 취득
- ▷ 공개된 출판물을 통한 영업비밀의 취득
- A. 역분석(역설계)에 의한 영업비밀취득은 영업비밀침해로 보지 않는다.

======= 【 기술보호와 법 】 =======

Q. 영업비밀은 '비밀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나 재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영업비밀이 알려지게 되었다. 영업비밀보유자는 필사적으로 비밀로 보호하기위한 노력을 하였고, 영업비밀의 공개 범위를 최소한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알려진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으로 예외가 인정되어 영업비밀로 계속 보호가 될 수 있을까?

A. 우리나라 재판은 공개재판의 원칙으로 헌법 제109조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알려질 경우 더 이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을수 없다. 직원에 의한 부정유출이든, 해킹에 의한 정보공개이든, 재판이나 국정감사 등과 같은 사유로 공개든 이유에 관계없이 공공연히 공개가 되면 예외없이 영업비밀로서 지위를 잃게 된다.

- 영업비밀보유자는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의 특정'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해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면 된다.
- 예를 들면, "~를 만드는 기술, ~의 배합 비율, ~를 조절하는 기술"정도로 서술하면 특정으로 충분하고, "~성분00%, ~성분00%"로 구체적인 배합비율이나 조절방법까지 특정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다.

======= 【 기술보호와 법 】 ======== << 영업비밀침해의 유형과 대응 >>

I.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는 6가지 유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6가지 침해 유형은 부정취득과 관련된 것과 비밀유지 의무자의 부정공개와 관련된 것 두가지로 나뉜다.

1. 부정취득행위

(1) 부정취득

1) 의의

-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 부정취득행위 후 별도로 사용·공개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부정취득행위만으로도 불법행위가 된다.
- 부정취득에서 절취, 기망이나 협박은 부정수단의 예시이다. 그 외 부당한 수단으로 강도, 폭행, 주거침입, 횡령, 배임, 장물에 관한 죄 등 형법 법규에 해당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이와 동등한 위법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사회질서 위반행위(도청, 매수, 위장 취업, 미인계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2) 취득행위 유형

- 영업비밀 그 자체인 유체물(비밀의 촉매나 신제품 등)이나 영업비밀이 기재된 유체물(설계 도나 고객명부 등)을 절취하거나 사기, 협박 기타의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하는 행위
- 영업비밀의 매체물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영업비밀의 매체물을 보관하고 있는 책상, 금고, 봉투 등을 무단으로 개봉하거나 사용하여 안에 들어있는 영업비밀을 기억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기억하는 사람으로부터 사기, 협박, 도청 등의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판결 >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바,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 【 기술보호와 법 】 ========= 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6.9. 선고 98다1928 판결).

3) 취득행위의 예

- ① 경쟁업체의 직원을 스카우트하는 행위
- 경쟁업체의 직원에 대한 스카우트가 단순한 노동력의 확보나 그 직원의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을 이용하기 위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볼 수 없지만, 경쟁업체의 영업 비밀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높은 직위나 고액 급여에 의한 매수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한 스카우트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며, 전직한 직원 역시 전 회사와의 계약관계나 부정한 목적의 유무 등에 따라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② 회사의 생산시설에 잠입하여 영업비밀을 탐지한 제3자의 행위
- 전형적인 산업스파이 행위로서 형법상 주거침입 또는 절도죄 등도 성립할 수 있다.

(2) 사용행위

- 영업비밀을 그 고유의 용도 내지 사용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 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98다1928 판결)

(3) 공개행위

- 영업비밀을 불특정인에게 공공연히 알리거나 또는 그 비공지성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매각하거나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 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98다1928 판결).
- 영업비밀을 공개한 상대방이 이미 그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부정한 공개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지는데, 판례는 영업비밀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공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005노257 판결).

====== 【 기술보호와 법 】 =======

2.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1) 의의

-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 : 영업비밀이 정당한 보유자로부터 자신의 앞선 자에게 이르는 영업비밀의 유통과정 중에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이 개입된 것을 의미한다.

(2) 행위유형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침해행위가 된다.
- 중대한 과실: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현저하게 기울이지 않은 경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 / 형법상 주의의 태만 (부주의)의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요구되는 주의에 대하여 행위자의 주의가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

3. 부정취득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

(1) 의의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 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침해행위가된다.
- 영업비밀을 취득할 때에는 선의·무중과실이었으나 이후 개입 사실을 알게 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자의 영업비밀의 사용·공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2) 행위 유형

- 앞의 두 경우와 달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후의 행위이므로 당연히 영업비밀의 사용과 공개행위만이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되며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 기술보호와 법 】 =======

4. 부정공개행위(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1) 의의

-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 한다.
- 부정공개행위 : 영업비밀의 정당한 보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영업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무 를 위반하여 당해 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이다.

(2) 요건

- 1)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
-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 3)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Ⅱ.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1. 민사적 구제

- 민사적 구제방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를 배 상받고 기업의 실추된 신용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1) 금지 및 예방청구권

-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 영업 : 경제주체가 경제상 수지의 계산 위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영업상 이익 :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의미한다.
- 청구권자 : 영업비밀 보유자 --> 1) 영업비밀을 최초로 개발한 원시취득자
 - 2) 양수인, 실시권자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보유·사용하는 자
 - 3) 역설계에 의한 영업비밀보유자
- 금지청구 내용 : 특정한 제품의 생산을 일정 기간 중지, 완성제품의 배포 및 판매 금지

====== 【 기술보호와 법 】 =======

(2) 전직금지(경업금지)청구

- 영업비밀 침해의 대다수 사건들은 퇴직 근로자들이 전 고용자의 정보를 임의로 새 직장에 서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처럼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였지만 퇴직 근로자들이 영업비밀을 지키지 않는다면 기업은 더 이상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 전직금지약정이 필요하다.
- 전직금지청구(혹은 경업금지청구)는 근로자로 하여금 단순히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한다.
-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전직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1) 당사자 간의 전직 또는 전직금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2) 당사자 간의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 1) 약정 내용과 금지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경우는 퇴직 후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청구 인정한다.
- 2)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경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법원 2002마4380 판결).
- 전직금지기간 : 영업비밀 존식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전직을 금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을 넘는 기간까지 전직을 금지할 수는 없다.

(3) 폐기·제거 등 청구권

-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의 수중에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를 그대로 둔다면 또다시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래의 침해행위를 금하는 것만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가 없다. 이에 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금지 및 예방청구와 더불어 폐기·제거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 (4) 손해배상 청구권
- (5) 신용회복 청구권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조치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영업상 신용이 실추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2. 형사적 구제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대응은 크게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것과 일반 형법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
- 침해 대상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영업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저장매체 등의 절취행위는 절도죄로, 영업비밀 유지의무를 부 당하는 자의 배신행위는 배임죄로 처벌 가능하다.

Ⅲ.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Q. 경쟁사에서 A사의 기술을 몰래 훔쳐가서 신제품을 개발한 것 같다. 경쟁사에서 먼저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하는데, A사 영업비밀인 설계도면의 원본 여부와 존재시점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1. 원본증명제도의 필요성

- (1) 전자정보의 원본 여부 및 제작 시점 입증의 어려움
- 영업비밀이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기업들은 이러한 영업비밀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 고객정보, 연구노트 설계도면, 재무 및 투자자료, 중요이메일 등 다양한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다.
- 그런데 전자문서는 무한복제가 가능하고 위·변조가 용이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출되었을 때 원본 여부와 제작시점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 (2) 영업비밀 침해사실 입증 시 비공지성 상실의 위험
- 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실제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특정한 영업비밀의 사용금지나 침해물의 폐기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인 영업비밀보유자가 영업비밀 침해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침해사실을입증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비밀을 제공하여야 한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인 비공지성을 상실하는 위험성이 있게 된다.

====== 【 기술보호와 법 】 =======

2.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도입

(1) 배경

- 영업비밀은 전자문서의 특성상 원본 여부와 존재 시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공개하면 비공지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원본증명기관 지정에 관한 내용과 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제재조항 그리고 원본증명기관은 등록된 영업비 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만들어졌다.

(2) 원본증명제도의 개요

- 다툼의 대상이 된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면 내용증명이나 공증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 내용증명 :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제3자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이다. 3부의 동일한 내용을 우체국이 1부, 발신인이 1부, 수신인이 1부를 가지게 된다.
- 공증 : 차용증, 매매계약서, 유언 등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제3자인 공증인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증은 법무법인이나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원본증명제도 : 내용증명, 공증과 달리 영업비밀에 특화되어 그 내용의 비공지성을 유지하면서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영업비밀보유자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한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전자지문)에 대한 검증을통해 영업비밀 내용의 공개 없이 영업비밀 존재시점, 보유주체, 원본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효과

- 영업비밀의 특정이나 보호요건의 입증과 관련하여 볼 때 원본증명제도를 통해 타임스탬프를 부여받았다고 하여 그것으로 해당 전자문서가 영업비밀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 정보가 영업비밀로서 보호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 전자문서의 생성시점 입증을 통해 시간적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해주므로 연구노트에 타임 스탬프를 체계적으로 부여하여 관리할 경우 개발 시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해짐 은 물론 구체적 연구개발 내용을 소송 과정에서 시기별로 확인 가능하므로 영업비밀 자체 를 특정하거나 침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하면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아이디어 노트, 연구노트, 설계도면, 거래실적, 재무자료, 투자계획, 마케팅 자료, 고객정보, 계약서 등 원본증명이 필요한 전자문서를 등록하여 원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즉 소송과정에서 해당 영업비밀의

======== 【 기술보호와 법 】 ========= 보유사실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타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용하면 거래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에 자신이 해당 기술의 정당한 보유자임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어서 기업의 기술이전 계약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전·현직 직원에 의하여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 직원과 해당 영업비밀과의 연관성이 파악되어 전·현직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 7월 30일, 영업비밀보 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원본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4) 활용사례

- 1) A사는 전기전자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신제품 개발계획, 제작도면, 거래처 정보 등이 저장된 파일을 영업비밀 원본등록하여 관리하였다. A사에 근무 중인 해외영업팀장은 퇴사 전 영업비밀로 관리해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동종업체로 이직하였다. A사는 전직직원을 고소하였고 증거자료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2) e커머스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던 A사는 사업투자처 발굴을 위한 사업제 안 전 중요자료를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로 등록하였다. 제안 과정에서 본 제안서의 내용은 영업비밀로서 보호하고 있는 자료임을 투자자에게 인지시킴으로서 거래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영업비밀 유출에 대비하였다.

======= 【 기술보호와 법 】 ======== <<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법제도 >>

I.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

1.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

(1) 개념

-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의 부정 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
- 부정경쟁행위란 민법상 불법행위의 특칙으로 영업주체가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경쟁상의 우위를 정당한 대가의 지불없이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확보하려는 행위를 의미 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 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차목은 카목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예시적 유형에 해당 한다.

(2) 보호법익

- 영업상의 경쟁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을 전제로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영업의 자유는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자유와 창의에 기반을 둔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다.

(3) 지식재산제도와 관계

-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과 함께 지식재 산권법에 해당한다.
-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이익'은 지식재산권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법에서 객체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는 방법(행위규제)에 의하여 지식재산의 보호를 하고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2. 아이디어탈취행위

(1) 배경

- 중소·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 2018년 개정 이전의 법에서는 아이디어 그 자체로는 상호나 상품 등의 성과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지 않았었다.

(2) 의의

- 2018년 법개정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허청장이 조사·시정권고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 개정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것이다.

3. 성과도용행위

(1) 의의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기존 열거적, 한정적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외에 보충적, 일반적 규정으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 이는 앞에서 나열된 유형 외에도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관계없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보호요건

- 1)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가 어느 정도의 투자나 노력이 투임되어야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아직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앞서 나 열된 각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법익에 대한 투자나 노력에 상응하는 정도의 투자나 노력에

======= 【 기술보호와 법 】 ========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 여기에 투자는 경제적인 투자와 시간적인 투자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적, 육체적 노력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성과

-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술적인 성과 이외에도 고객에 대한 이미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과 같이 창작적인 것은 물론, 기존에 알려진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비즈니스 플랫폼 등과 같은 것도 포함한다.
- 방대한 고객 데이터나 SNS 등을 이용한 고객 네트워크와 같은 무형의 성과도 포함된다.

3) 위법한 무단 사용

- 타인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 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이 해당 분야의 상거래 관행 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이용이 특별히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경쟁 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 (예. 타인이 이룩한 성과가 해당 분야에 표준적인 것이어서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성과를 이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 없다.)
- 성과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므로 자신의 영업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 예컨대 보다 개량된 성과를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경제적 이익의 침해

-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한다는 것이다.
- 재산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접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더라도 침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면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의 침해는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 경우 경제적이익의 침해라고 본다.

II. 기술탈취·유용 등 사례

1. 계약 전 아이디어·기술자료 탈취

(1) 입찰 과정에서 대기업 협력사를 통해 기술자료 유출

======= 【 기술보호와 법 】 ========

- 지하주차장 환기설비업체 A사는 대기업 B사의 기술협력사인 C사로부터 신축건물의 환기설비설계 의뢰를 요청받아 정식 기술거래계약 체결없이 상세도면, 견적 등을 포함한 기술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후 B사 주관의 입찰 선정평가에서 A사가 제공한 기술자료가 경쟁업체인 D사에서 활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평가결과 A사는 입찰에서 제외되어 B사와 C사의 기술자료 유출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설비공사에 관한 재하도급 거래의 경우, 1차 수급기업이 원 도급기업을 핑계로 2차 수급 기업에게 계약을 미체결한 상태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탈취가 빈번히 발 생할 수 있다.
- 사전에 비밀유지협약을 포함하는 기술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공할 대마다 특정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 비밀유지협약 : 상호 간 기술제휴, 이전 및 동업 등의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 자 간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 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 --> 거래 전에 비밀유지협약 체결 없이 유출된 기술자료는 중소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준 것처럼 해석이 되어 법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법원은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근거를 판단할 때 자료제공 시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파악하므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거래 전에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납품제안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요구
- 금형제조업체 A사는 중견기업 B사로부터 납품계약을 제안받으면서 도면, 기계 사양 등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았다.
- (3) 대기업의 공모전 아이디어 도용
- 그래픽 디자인 회사인 A사는 대기업 B사가 주최하는 콘텐츠 공모전에 참가하여 제품 디자인, 광고카피 등의 아이디어를 제출하였다. B사는 A사에 사전 동의없이 제출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A사가 제출했던 제품디자인, 광고 카피문구를 신제품 디자인에 적용하여 출시하였다.
- 주최 측의 제안 아이디어 권리 소유, 상장·상금 대가로 권리 이전 등 아이디어 권리 귀속에 대한 공모전 세부규정의 사전검토를 해야 한다.
- (4) 컨소시엄 제안 과정에서의 기술탈취
- 교량시공전문업체 A사는 도로건설 설계 입찰에 참가한 대기업 B사의 컨소시엄 제안을 받

======= 【 기술보호와 법 】 =======

고 핵심 기술자료를 B사에 제안하였다. B사는 A사에 아이디어, 핵심기술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낙찰에 성공하였으나, B사는 핵심기술을 제공한 A사가 아닌 C사와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 기술임치제도

- 외부로 기술이 공개되기 전 또는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전에 자사의 기술임을 입증 받을 수 있도록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에 임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임치된 기술은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5) 부품 샘플을 경쟁사에 제공하여 복제품 제작
- 대기업 B사는 선박부품 제조업체 A사에게 기술설명회를 요청하여 부품샘플을 제공받고, 타기업인 C사에 제공하여 복제품을 생산하도록 지시하였다. B사는 C사를 통해 생산된 복 제품을 직접 사용하였다.

2.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유용

- (1)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거절하여 경쟁사로 기술자료 유출
- 굴삭기 부품업체 A사는 대기업 B사로부터 납품단가 20% 인하를 요구받았으나 거절하였다. B사는 A사와 거래과정에서 확보한 설계도면 등의 기술자료를 C사에게 제공하여 동일 제품을 개발하게 하고 A사와 거래를 중단하였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B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요구행위
- 대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한 아웃소싱 전략에 따라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통상 하도급거래의 기술침해 즉 기술유용행위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특히 단가인하 명분으로 상세한 핵심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제3자와 비교견적을 위해 자연스럽게 경쟁기업에게 유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한다.
- 하도급법 상 부당한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2) 품질관리 명목으로 협력사의 기술자료 탈취
- 대기업 B사는 제품 경쟁력, 품질확보의 명목으로 부품협력사 A사에 제조공정, 작업표준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 B사의 제품양산 취소가 두려워, A사는 B사로 각종 기술자료

======== 【 기술보호와 법 】 ========= 를 제공하였으나, B사는 A사의 자료를 C사로 유출하여 양산하였고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A사의 신고로 조사 중이다.

- (3) 입찰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자료가 경쟁사로 유출
- 설비성능평가 및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A사는 공공기관인 B사의 용역을 수행하면 서 기술절차서, 보고서 등 영업비밀을 제출하였다. B는 추가 용역발주 과정에서 A사의 영업비밀을 C사에게 제공하여 저가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였다.

● 용역계약시 기술자료 제공범위 확인

- 기술용역의 경우, 발주처에서 사후관리를 명목으로 기술거래계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핵심기술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기술용역 체결단계에서부터 용역제공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핵심기술에 대한 요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용역의 범위를 벗어난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개별적인 비밀유지협 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술거래를 통해 해당 기술정보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3. 해킹, M&A 등을 통한 기술유출

- (1) 개인 휴대폰으로 기술자료 무단 촬영
- A사는 보안점검을 위해 CCTV를 확인하던 중 특허등록 상담을 위해 기업을 방문한 변리 사가 회사의 기계도면을 스마트폰으로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A사는 해당 변리사와 다년간 거래로 비밀유지 서약은 별도로 받은 적이 없었다. A사는 기술유출신고 를 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변리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고지하고 해당 변리사의 휴대폰에서 무단 촬영한 사진을 삭제조치하였다.

(2) SNS를 통한 기술유출

- 광고영화를 제작하는 A사에 2년간 재직한 B는 퇴직시 임금체불에 대한 불만으로 컴퓨터 그래픽소스, 촬영본, 결과물 등을 개인SNS에 무단으로 게시하여 거래처들에 기술자료를 유출하였다.

● 유의사항

- 회사에서 습득한 사업상 모든 정보 및 영업기밀 등을 외부로 유출·누설하지 않겠다는 보 안서약서를 입사·퇴사시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영업비밀유출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안교육을 해야 한다.
-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퇴직자 비밀유지 서약서를 청구하고, 퇴직자가 개발한 기술의

======= 【기술보호와 법】========= 일체 권리는 회사에게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 (3) M&A 과정에서 기술자료만 탈취
- 자동차부품회사인 A사는 대기업 B사로부터 인수의향을 듣고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 A사는 B사에 사전검토 목적으로 핵심정보와 기술자료 등 영업비밀을 전달하고 비밀유지협약체결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기술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후 대기업 B사는 인수 철회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A사는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 < 기술보호 예방의 방안 >
- (1)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한다.
- (참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www.ultari.go.kr)
- (2) 회사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3) 정기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4) 모든 직원은 "비밀유지서약서", 핵심직원은 "전직금지서약서"를 체결한다.
- 비밀유지서약서 : 교육시에는 보안 정책 및 보안 세부 규정을 숙지하였다는 문구를 포함 하고, 프로젝트 투입시에는 구체적인 업무, 신분, 기밀 업무 범위 등을 서약서에 명시
- 전직금지약정: '재직 중 취득한 모든 기술, 경영정보' 또는 '영업비밀'과 같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재하는 것보다 '해당 영업비밀이나 보호할 이익에 대한 명칭이나 개요 도는 형태(설계도면, 회로도, 소스코드, 배합비율 등), 관리번호가 있는 경우 그 번호, 프로젝트 명칭이나 산출물 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 (5) 핵심기술 인력이 퇴직할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정 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
- (6) 중요기술은 영업비밀로 관리할 때 문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접근·복제·반출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7) 기술자료 제공시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 기술보호와 법 】 ======== << 창업 꿈나무가 알아두어야 할 법제도 >>

I. 창업의 의의

1. 창업의 개념

(1) 개념

- 창업은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 기업은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 묻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기업이든 새로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창업의 범위에 속한다.

(2) 형식

- 창업은 창업자 개인이 단독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동업을 하는 경우 및 회사 등의 법인 설립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업의 형태

- 창업자가 단독의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는 경우와 타인과 함께 동업하여 창업하는 경우 및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 개인이 단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형태를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1인 설립이 가능한 회사법인으로 창업할 것인지 정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형태를 회사법인 형태로 할 것인지도 정하여야 한다.

Ⅱ. 기업의 형태

1. 개인기업

(1) 특징

- 창업자가 단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인 창업이 가능한 회사법인에 의한 창업도 가능하다.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창업자의 판

======= 【기술보호와 법】======== 단에 다르는 것이다.

- 개인기업 형태의 창업은 창업자 스스로 영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다. 흔히 '자영업'이라고 한다.

(2) 장점

- 창업절차가 간단하고 창업비용도 적어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 창업하는 기업 경영에 관한 방침과 계획을 창업자가 자유롭고 신속하게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영업 이익도 전부 창업자 자신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며, 결산 처리에 있어서도 대차대조 표와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나, 법인의 경우와 같은 엄격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 창업 후 영업의 양도도 창업자가 단독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 단점

-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손실 전부 창업자에게 귀속되며, 영업상 채무에 대해서도 창업자가 단독으로 직접 무한 책임을 진다.
- 자본금 조달에 창업자 개인 능력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4) 창업절차

- 창업자가 개인기업의 형태로 창업하는 경우,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점포나 사무실에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 창업자가 미성년자나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민법 일반 원칙에 따라 창업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거나 법정대리인 에 의하여야 한다.

2. 회사 - 주식회사

(1) 의의

- 주주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본금을 그 존립의 기초로 하며,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설립시나 신주 발행시 자신이 이니수한 주식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회사 채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 전형적인 물적 회사이다.

(2) 조직과 운영

1) 주주

======= 【 기술보호와 법 】 ========

- 주주는 주식회사의 사원으로서 주식의 소유자이다.
- 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만 부담하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 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2) 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는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주식회사에서 필요기관이다.
- 이사회와 감사기관은 회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자본금 10억워너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 1명이나 2명을 둘 수 있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중규모회사에서는 이사회와 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을 두어야 하며 감사기관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 회 중 하나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다라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사

- 중규모 및 대규모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 이사 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 등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를 한다.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 상장회사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집행임원은 대표이사에 갈음하여 이사회의 감독 아래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자를 말한다.

4) 감사

-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이익배당

-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 주식배당 : 이익배당을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주식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 기술보호와 법 】 =======

(3) 회사의 설립

- 주식회사는 자본을 중심으로 하므로 회사 설립에서 자본의 형성과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형성절차와 설립경과 조사절차가 요구된다.

- 주식회사 설립사무는 발기인이 집행하는데, 발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발기인조합을 구성 한다.
- 발기인조합은 회사가 성립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해산한다.

1) 발기인

-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이며 회사 설립의 사무를 집행한다.
- 발기인의 수는 1인이면 되고, 발기인의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다.

2) 정관의 작성

-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먼저 발기인이 법정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것을 말한다.

3)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 목적 : 회사가 수행할 영업의 범위를 말한다.
- 상호 : 주식회사라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보험·은행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상호 중에 그 내용을 포함하는 문자도 있어야 한다.
- 발행주식의 총수 : 회사가 성립 후 존속 중에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의 총수를 말한다.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회사가 공고를 할 때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 간신문에 할 것인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원시 정관으로 기재하게 한 것이다. 전자적 방법은 공고할 사항을 당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 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하면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그 기재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고, 기재하지 않으면

======= 【 기술보호와 법 】 ========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이다.

(4) 상호

- 상인이 영업활동에서 자기의 영업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 자연인인 상인은 자기의 성명 이외에 자신의 영업활동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호를 사용하며, 회사 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의 명칭이 상호가 된다.
- 상호는 영업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표시하며, 영업에 관한 명성과 신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 상호 선정의 자유 : 상인이 상호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성명 기타 명칭으로 상호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회사의 상호에는 회사종류를 나타내는 주식회사 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은행, 보험, 증권 등 특수한 영업을 하는 회사는 그 상호에 은행, 보험, 증권 등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회사가 아닌 상인은 상호 중에 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개인상인의 상호는 그 등기 여부가 상인자유이다. 회사의 상호는 회사의 설립등기사항으로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주주총회

Ⅲ. 창업

1. 창업 일반 절차

(1) 사업계획서 작성

- 창업을 하는 경우에 창업자가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수익성을 창출할 것인지 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기술하는 것이다.
- 사업의 비전과 목적, 조직, 성장잠재력, 시장현황과 변화 추이, 제품과 마케팅 등의 사업전략과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의 자가진단 수단이자대외적으로 각종 지원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2)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 사업계획서의 용도는 대내적 목적과 대외적 목적으로 구분된다.

======= 【 기술보호와 법 】 =======

- 대내적으로는 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사업의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내부 역량을 효과적 으로 결집하는 수단이 된다.

- 창업자는 창업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창업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창업 비용을 절약하고 창업의 시행착오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여 사 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대외적으로는 금융이나 투자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또는 정부나 지자체, 신용보증, 기술보증 등 각종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이용된다.

(3) 기재사항

- 사업의 아이템과 창업의 목표, 경영조직과 앞으로의 생산·판매·자금조달 등의 각종 계획, 미래 발전 방향 등 당해 기업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기재사항을 체계적으로 일목요 연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창업기업형태의 구분

(1) 벤처기업의 창업

- 벤처기업은 창업의 위험성이 크고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창업하여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첨단 신기술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기술집약적 신생중소기업을 말한다.
- 벤처기업에 대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기업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2) 인터넷창업

- 인터넷 대중화로 인터넷 창업이 많아지고 있다.
- 분야로는 인터넷 쇼핑몰, 정보 및 서비스 판매, 인터넷 교육, 인터넷 금융, 인터넷 출판, 인터넷 방송, 인터넷 광고 등 다양하고 독창적인 창업이 많다.

(3) 인수창업

-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템으로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의 영업을 인수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 인수창업이라고 한다.
- 기존 영업에 관한 시설이나 권리, 노하우 등을 승계하여 창업에 소요되는 위험 부담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1) 영업인수

- 영업을 하던 양도인으로부터 그 영업을 인수하여 창업을 하는 것이다.
- 인수창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계약이다.

2) 인수의 요건

- 영업의 물적·인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 기능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인적 조직의 승계를 중시하고 있다.
- 따라서 인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의 물적 설비를 모두 인수하더라도 기존 종업원들을 전부 해고 하는 경우에는 인적 조직을 승계한 것이 없으므로 영업의 인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 동일한 사업주로부터 특정 지점의 영업만을 이전받는 것은 영업의 일부 인수로 되지만, 단순한 출장소나 공장 등의 인수는 영업재산의 인수이며 영업의 인수가 되지 않는다.

3) 인수인의 영업재산이전청구권

- 영업인수계약이 체결되면 영업인수인은 양도인에게 인수의 대상인 영업재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영업양도인은 인수인에게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영업재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 영업재산의 이전 방법으로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등기, 등록, 인도, 배서·교부 또는 단순한 교수 등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 영업상 비결과 고용관계 등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영업 인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인이 개별적으로 전수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야 한다.
- 영업의 인수에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기존 근로계약관계도 인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승계된다. 영업의 인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는 때에는 실질적인 해고이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불승계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이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

-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과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군에서 10년간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 인수인과 양도인 사이에서 경업금지기간을 이 기간보다 더 장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영업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는 인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의무이다.

======== 【 기술보호와 법 】 ========= - 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인근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계속한다면 그 인수인은 영업 인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영업의 인수인이 그 영업 인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 기술보호와 법 】 ======== <<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이해 >>

I.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1. 소송

- 소송은 재판절차를 모두 밟는 정식절차와 그렇지 않은 간이절차로 나뉜다.
- 간이절차는 간단하고 편의적인 재판절차로 형사소송의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민사소 송의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 등을 들 수 있다.

(1) 정식절차

- 민사소송의 정식재판절차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 및 소송의 목적과 근거 등이 기재된 소장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재판이 개시되고, 공개 법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변론절차를 거쳐 법원이 판결을 내림으로써 마무리된다.
- 형사소송에서는 정식재판절차를 '공판절차'라고 부른다. 이 경우 검사가 피고인의 성명, 죄명,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그에 적용할 법조항 등을 기재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 써 재판이 시작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종결된다.
- 정식절차는 재판의 기본이 되는 방식이다. 정식절차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진실을 찾고 진정한 권리자를 가리는 가장 좋은 형태이다.

(2) 간이절차

1) 약식절차

-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을 법원에 불러 심리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사가 벌금 등의 형을 내리는 절차이다. 약식절차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의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즉결심판

-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이다. 즉결심판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 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결심판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3) 소액사건심판절차

- 소송 목적물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을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 빠른 진행을 위해 심리는 한번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

(1) 협상

-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알선

- 제3자가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자가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재/조정과 구분된다.

(3) 중재

- 당사자끼리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중립적인 제3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제3자가 중재안을 내놓는 것을 중재라고 한다.
- 중재는 사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법원이 아닌 중재위원회 등 다른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 어지는 경우도 많다.
- 국제거래에서의 중재, 상거래에서 중재, 노사분규의 중재 등 다양한 예가 있다.

(4) 조정

- 중립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양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양보하게 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 중재와 다른 것은 제3자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 예. 민사조정제도, 가사조정제도가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이해 >>

I. 개인정보보호는 무엇인가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1) 개인정보의 의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 아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 이름 + 전화번호, 이름 + 주소,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종류

- 일반적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통신 위치 정보 : 통화기록, IP주소, GPS 등

- 사회적 정보 : 교육정보, 근로정보, 자격정보

- 정신적 정보 : 기호, 성형, 신념, 사상

- 신체적 정보 : 신체정보, 의료정보, 건강정보

- 재산적 정보 : 개인의 신용정보, 부동산, 주식 등

(일상에서의 개인정보)

- 출근: 교통카드, CCTV --> 이름, 계좌, 카드번호, 영상
- 스마트폰으로 뉴스 검색 --> ID, PW, 사진, 동영상, 빅데이터
- 사무실 출입 : 전자카드 --> 이름, 사번
- 업무 --> 이름, 계좌, 카드번호, 영상, 이메일, 전화번호
- 점심식사 :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카드 --> 이름, 각 카드번호, 연락처, 위치정보
- 온라인쇼핑 --> ID, 신용카드정보, 주소, 연락처
- 병원진료 --> 건강보험정보, 이름, 병명, 진료기관
- 친목모임 --> 이름, 연락처, 학교정보, 전공, 졸업년도

====== 【 기술보호와 법 】 =======

2. 개인정보의 요건

(1) 살아있는

- 생명이 있는 것을 의미
- 생명이 없는 사물이나 법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2) 개인에 관한 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특정 개인과 연관이 되는 정보
-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은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보다는 특정 사물이나 대상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정보이므로 1차적으로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보의 특성상 특정 개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 날씨, 각종 기기의 제원 등은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

(3)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 1)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학번, 사번 등은 특정 개인에게만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 성명, 주소와 같은 정보는 동명이인이 있고 같은 주소지에 여러 사람이 거주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그러나 성명과 주소가 결합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므로 이들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된다.
- -->정보가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정보들 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사례) 휴대폰은 위치정보를 사용하고 있다. 위치정보 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하기 어려우나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휴대폰은 특정 개인이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특정 개인과 밀접한 연 관성이 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거나 주변의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는 서비스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각종 재난 신고나 구조활동에도 위치정보가 이용되고 있다. --> 위치정보는 휴대폰 이용자의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된다.

2)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 통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서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 기술보호와 법 】 ========

- 예. 주민등록번호의 14자리 숫자는 누구의 주민번호인지 추측할 수 있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숫자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회원가입이나 통장개설 등 사회활동은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이 번호가 누구의 번호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3. 개인정보의 특징

- (1)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제한 없음
- 디지털 형태나 수기 형태, 자동처리나 수동처리 등 그 형태나 처리방식과는 무관하게 판단한다.
-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에 관한 정보, '사실'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정보도 개인정보이다.
- (2)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 다른 정보 없이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 결합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 Q.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 숫자가 개인정보일까?
- A.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뒷자리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전화번호, 가족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대전지법논산지원 2013고단17판결)

[사례] 자동차 등록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와 결합하면 등록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입출차시간과 결합하게 되면 특정 개인이 특정 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을 알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개인정보보호의 효과

(1)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 【 기술보호와 법 】 =======

- 개인 : 정신적 피해 및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전적 손해,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 에 노출 우려 등

- 기업 : 기업 이미지 실추 및 소비자단체의 불매운동의 대상, 다수 피해자에 의한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금전적 손실 등
- 국가 : 정보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국가 이미지 하락 등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수집, 이용, 공개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 체가 스스로 통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3)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분야의 일반법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의료법 등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적용하여 판단 (특별법우선의 원칙)

Ⅱ. 개인정보보호의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는 무엇인가

1.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 (1)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 필요최소한의 수집
- 1) 처리 목적의 명확화
-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목적은 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에 기재
- --> 개인정보 처리 목적은 "OO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OO회원가입을 위하여"와 같이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2) 필요 최소한 수집

-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정해졌으면 개인정보 수집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수집하여야 한다. -->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원칙'
- 예. 3개의 포털이 있다고 할 때 타사보다 정보를 더 요구할 때에는 왜 수집하여야 하는지 를 증명해주어야 할 것

======= 【 기술보호와 법 】 ========

- (2)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외 활용금지
- 적법하게 :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신청, 신고, 인·허가,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지켜야 한다는 의미
- 개인정보는 그 처리목적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 당초 설정한 처리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3) 처리목적 내에서 정확성·최신성·완전성 보장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한 제품을 발송하여야 하는데 주소나 연락처가 잘못되어 있다면 제품발송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고객의 주소가 일부만 기재되어 있거나 이름이 누락되어 있다면 배송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회원의 개인정보는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회원의 주소지가 과거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다면 구매한 제품은 과거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주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될 것이다.
- (4)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속의 차단이나 개인정보 취급자들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등은 지속적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
- (5)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는 것, '정보 통신망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내역을 이메일로 안내
-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그리고 파기에 대한 요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이러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쉽도록 요구절차를 개인정 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즉시 응해야 한다.
- (6)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고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 기술보호와 법 】 =======

- 개인정보 중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 --> 민감정보 (예.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보주체의 건강정보 등 민감한 정보나 개인의 고민 상담 내역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행위)

(7) 익명처리의 원칙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를 식별하지 않더라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화하여 처리
- (8)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신뢰 확보 노력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2. 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 결정할 권리
- 처리 개인정보의 처리여부 확인,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정치,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개인정보의 처리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 Q. 학원에서 수강생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지역, 출신학교, 휴대전화번호 등을 적으라고 하는 것이 과도한 수집인가?
- A. 학원은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련한 법령에 따라 수강생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수강생대장에는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원등록연월일 등을 기재하도록되어 있다. 그 외 성별, 지역, 출신학교는 법령에서 정한 항목이 아니므로 반드시 필요한정보가 아니라면 수집하면 안된다.